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3814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8381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1. 16 선고 2001나3020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AB 담당변호사 유BA외 11인)

【피고, 상고인】 신CA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조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1. 11. 16. 선고 2001나302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문서의 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나 관련 약정과 종합적으로 보아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작성자의 의사표시 내용을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512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사정과 그 각 계약의 내용 등에 관하여 사실인정을 한 후, 새로운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란의 '구 보증서에 의하여 신CA기금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 잔액이 상환될 때까지 본 보증서의 한도에서 그 주채무 잔액을 차감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기재는 관련 사정을 함께 고려할 때, 새로운 신용보증이 앞선 근보증의 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기존의 잔존채무가 새로운 근보증에 의하여도 담보된다는 의미라는 요지로 인정·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그 인정·판단은 옳고 거기에 증거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나 처분문서의 의사표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